



제437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회의 감사 요구에 대한 감사기간 준수〉

■ 윤건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221호)

2026. 7.

국회 운영 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경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 참고자료	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윤건영 · 양부남 · 박정현 · 김성희 · 장종태 · 민병덕
한병도 · 신정훈 · 권칠승 · 최혁진 · 윤종균 의원
(11인)

2. 제 안 일 : 2025. 12. 12.

3. 회 부 일 : 2025. 12. 15.

※ 의안번호 : 152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로 기간 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중간보고를 하면서 감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

그런데 감사기간 내에 감사 결과가 국회에 보고되지 않고 감사기간이 경과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감사원 감사 요구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사원이 법정기간 내에 감사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로 감사원장에 대하여 국회

에 출석 및 해명할 수 있도록 하여 감사원 감사 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7조의2제3항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감사원이 감사기간(최초 3개월 + 연장 2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국회는 의결로 감사원장에 대하여 국회에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27조의2제3항 신설).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7조의2(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등) ①·② (생략) <u><신설></u>	제127조의2(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기간(제2항에 따라 감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감사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감사원은 국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회는 의결로 감사원장에 대하여 국회에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할 수 있다.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제도는 국정에 대한 보고·서류 등 제출 요구와 더불어 국회가 국정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써, 제16대국회 「국회법」 개정(2003. 2. 4.) 시 도입되었음.

국회는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직무 범위¹⁾인 ① 국가의 세

1) 「감사원법」 제20조(임무)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검사를 하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입·세출 결산검사, ② 「감사원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회계의 상시 검사·감독, ③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감찰 사항 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음.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간보고를 하고 2개월의 범위에서 감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²⁾ 즉, 감사원은 국회가 요구한 감사에 대하여 5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그런데, 제22대국회의 감사 요구 현황³⁾을 살펴보면, 총 감사 요구 건수 13건(1건은 감사기간 미도래) 중 감사기간(최초 3개월 + 연장 2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보고한 건수는 2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10건은 감사기간 이내에 보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⁴⁾

[표-2] 제22대국회 감사 요구 현황

감사기간 미도래	감사기간 준수	감사기간 미준수	계
1건	2건	10건	13건

* 자료: 국회사무처 제공자료 재구성

서 정하는 회계를 상시 검사·감독하여 그 적정을 기하며,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 운영의 개선과 향상을 기한다.

2) 「국회법」 제127조의2(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등) ① 국회는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사항 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원은 특별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간보고를 하고 감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2개월의 범위에서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2025. 12. 18. 기준임.

4) 감사기간이 도래한 12건은 모두 감사기간이 2개월 연장되었음. 1건의 감사 요구가 여러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중 일부 사항에 대하여 감사 결과를 보고한 경우 감사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함.

즉, 감사기간 및 보고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현행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법정기간 이내에 감사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감사기간(최초 3개월, 연장 2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감사원은 국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국회는 의결로 감사원장에 대하여 국회에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이는 국회가 소명자료를 통하여 감사 사안의 복잡성, 감사전망 등을 효과적으로 파악·검토하는 동시에 감사기간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제재조치로서 감사원장의 출석·해명을 국회가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감사원에 대한 국회의 감사 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적시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임.⁵⁾

5) 최근 개정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2025. 10. 1. 공포·시행)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수사기간(최초 2개월 + 연장 2개월)을 초과하여 수사 중인 때에는 수사기관의 장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수사기관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수사기간 등) ① 제15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수사처검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결과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이 「형사소송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사건을 이송 또는 이첩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사기관이 특별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수사를 종결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수사기관의 장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중간보고를 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은 2개월의 범위에서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수사기관이 제3항에 따른 수사기간 연장 없이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여 수사 중이거나 제3항에 따라 연장된 수사기간을 초과하여 수사 중인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의 장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그 수사기관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참고로, 개정안에 대하여 감사원은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감사처리 지연에 대한 감사원장의 국회 출석 및 해명은 감사의 공정한 처리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제도의 적실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⁶⁾

문 의 처

02)6788-5017

⑤ 위원회의 활동기한 종료 등의 사유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보고 등을 받을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장은 본회의에 보고 등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본회의는 수사기관의 장에 대하여 제4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6) 감사원은 현행 「국회법」은 국회와 감사원이 감사범위·기간 등을 사전에 협의하는 절차를 두고 있지 아니하고 국회감사요구 사항의 보고기간을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미국 GAO의 경우 의회에서 감사요청을 하면 감사범위·기간 등을 조정·협의를 한 후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함.

참고 제22대국회 감사원 감사 요구 현황

연 번	의안명	소관위	본회의 의결	감사기간	보고서 제출	비 고
1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등에 대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과방위	24. 9. 26.	24. 9. 27. ~ 24. 12. 26. (~ 25. 2. 26. 2개월 연장)	25. 3. 25.	
2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의혹 등에 대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과방위	24. 11. 14.	24. 11. 14. ~ 25. 2. 13. (~ 25. 4. 13. 2개월 연장)	25. 7. 8.	
3	2024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교육위	24. 11. 28.	24. 11. 29. ~ 25. 2. 28. (~ 25. 4. 28. 2개월 연장)	25. 4. 28. / 25. 6. 23.	2회 분리 보고
4	2024년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행안위	24. 11. 28.	24. 11. 29. ~ 25. 2. 28. (~ 25. 4. 28. 2개월 연장)	25. 7. 2. / 25. 7. 28.	2회 분리 보고 / 일부 미보고
5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법사위	24. 12. 5.	24. 12. 5. ~ 25. 3. 4. (~ 25. 5. 4. 2개월 연장)	25. 7. 4.	
6	2024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농해수위	24. 12. 26.	24. 12. 26. ~ 25. 3. 25. (~ 25. 5. 25. 2개월 연장)	25. 5. 23. / 25. 7. 25.	2회 분리 보고
7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운영위	25. 1. 17.	25. 1. 17. ~ 25. 4. 16. (~ 25. 6. 16. 2개월 연장)		

연 번	의안명	소관위	본회의 의결	감사기간	보고서 제출	비 고
8	2024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국토위	25. 1. 17.	25. 1. 17. ~ 25. 4. 16. (~ 25. 6. 16. 2개월 연장)	25. 7. 7. / 25. 11. 3.	2회 분리 보고
9	김용원 상임위원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헌정부정, 내란선전 행위와 관련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운영위	25. 2. 14.	25. 2. 14. ~ 25. 5. 13. (~ 25. 7. 13. 2개월 연장)	25. 12. 10.	
10	의대정원 증원 추진과정에 대한 감사요구안	교육위	25. 2. 14.	25. 2. 14. ~ 25. 5. 13. (~ 25. 7. 13. 2개월 연장)	25. 11. 27.	일부 미보고
11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	교육위	25. 2. 27.	25. 2. 27. ~ 25. 5. 26. (~ 25. 7. 26. 2개월 연장)	25. 12. 17.	
1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류희림)의 민원사주와 은폐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과방위	25. 3. 13.	25. 3. 13. ~ 25. 6. 12. (~ 25. 8. 12. 2개월 연장)		
13	2025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교육위	25. 12. 3.	25. 12. 3. ~ 26. 3. 2.		

* 자료: 국회사무처 제공자료 재구성(2025. 12. 18. 기준)